

4단계 BK21 아주 수리과학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팀 운영 규정

제정 2024. 6. 5
개정 2024.10.14
개정 2025. 5. 7
개정 2025. 7. 2
개정 2026. 1.14
개정 2026. 6.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아주 수리과학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팀(이하 “교육연구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교육연구팀은 연결지성을 바탕으로 순수 및 산업수학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형 미래 수학자 및 응용 수학자 양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전주기적 교육 강화
- ② 미래선도형 연구 생태계 조성
- ③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 ④ 기타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교육연구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교육연구팀의 구성) ① 교육연구팀은 아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참여교수, 참여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연구팀은 교육연구팀의 장(이하 “교육연구팀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교육연구팀장) ① 교육연구팀장은 선정된 교육연구팀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대학 및 교육연구팀은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교육연구팀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팀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 수행으로 교육연구팀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팀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교육연구팀장이 부재 시에는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팀장

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명이 교육연구팀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연구팀장은 4단계 BK21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자 및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제 3 장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① 교육연구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을 포함한 참여교수 4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6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팀 사업계획 수립
2. 교육연구팀 예산 및 결산
3.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의 구성에 관한 결정
4. 교육연구팀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5.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교육연구팀 전담 직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교육연구팀 채용위원회

제8조(구성) ① 교육연구팀의 우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팀 채용위원회(이하 “채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채용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을 포함하여 참여교수 3인과 비참여교수 1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채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9조(심사기준) 채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심사를 실시한다.

1. 서류 심사 : 지원자의 이력서, 논문 실적, 영문 Research Statement, 추천서 등 연구 성과의 우수성 심사
2. 발표 평가 : 주 전공 영역에 대한 전문성, 외국어 능력 등 연구능력 심사
3. 면접 심사 : 전공 영역의 적합성, 연구 적극성, 연구 소통 능력 등 교육연구팀의 연구사업 목표와의 부합 여부 심사

제10조(임용) ① 연구원 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내 연구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 5 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제11조(참여교수의 자격)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 라고 한다)는 한국연구재단(BK21사업팀)에서 지정한 참여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교육연구팀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교수를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참여교수의 의무) 참여교수는 교육연구팀의 목표에 맞게 우수한 국내·외, 우수 논문에 논문 게재, 우수 대학원생 인력 양성·배출, 산학협력 등의 의무를 지며, 항상 교육연구팀의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참여교수의 선정 및 교체)

- ① 참여교수 연구 경쟁 유도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참여교수의 변경 및 증원을 결정한다.
- ② 참여교수의 평가 지표상의 정량적인 실적(대학원생의 연구 실적, 교수 연구 실적, 특허, 연구비, 교수업적 평가 기준 등)을 근거로 참여교수의 변경 및 신규 선발 등의 근거로 삼는다.
-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팀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팀 참여를 인정한다.

제 6 장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제14조(참여대학원생의 자격)

- ① 교육연구팀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원생(이하 “참여대학원생” 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팀에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수학과에 재학 중인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이어야 한다.
 3.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 ②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팀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단, 제13조에 따른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6.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협동과정생
 7.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8. 의·치·한의학 분야에서 동일 대학 소속의 4대 보험 가입자인 기초전공의와 의사조교
- ④ 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은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교육연구팀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교육연구팀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7.2.)

제15조(참여대학원생의 의무)

- ①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교육연구팀장이 요구하는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② 참여대학원생은 지도교수를 도와 연구 및 연구 보조 활동에 매진하여야 하며, 연구실별 또는 전체 교육연구팀 규모의 세미나 및 학술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대학원생)

- ① 지원대학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 ② 성적 및 연구 능력이 우수한 전일제 등록 석,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70% 이내로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검토 후, 교육연구팀장이 최종 확정한다.
- ③ 4단계 BK21사업에서 규정한 연구장학금 한도 내에서 매월 석사는 100만원 이상, 박사는 160만원 이상, 박사 수료는 130만원 이상 지급한다. 연구장학금은 예산에 따라 일괄 증액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학기별·분기별·월별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④ 지원대학원생 중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으로 인하여 월말일 전에 학적이 말소되더라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졸업 해당 월의 장학금을 전액 지급한다. 단, 졸업일 이후 장학금 외 기타 사업비 지원은 불가하다. (신설 2024.10.14.)

제17조(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활동)

- ① <삭제 2025.05.07.>
- ② <삭제 2025.05.07.>
- ③ 연구를 장려하고 참여대학원생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 ④ 연구·교육 참여를 장려하고 수학과 TA 간 교육 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 및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신설 2026.1.14.)

제17조의1(Deep Ajou Research Time in Mathematics 운영)

①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몰입시간 확보를 위하여 Deep Ajou Research Time in Mathematics (이하 “DART.M” 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5.7.2., 개정 2026.6.10.)

제 7 장 신진연구인력 채용 및 지원

제18조 (목적) 이 지침은 아주 수리과학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 의무, 계약해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 (채용 시기) 신진연구인력 필요가 인정될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 채용한다.

제20조 (채용 원칙) ① 지도교수에 의해 추천된 지원자는 참여교수 전원에게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지원서류를 공개하고, 운영위원회 평가 및 심의 과정을 거쳐 채용을 확정한다.

②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연구 분야의 밀접성, 연구실적의 우수함 이외에도 타 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원활하고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고려하여 추천 및 채용된다.

③ 박사후연구원은 연구실적을 고려하되 지도교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천 및 채용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을 3인 이상 채용 시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단, 1명 또는 2명 채용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 이상 최대 4단계 BK21 사업종료까지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신분 및 직위) ① 계약교수는 특별임용교원으로 직위는 연구조교수 또는 연구부교수다.

② 박사후연구원은 기초과학연구소 소속 전임연구원이다.

제23조 (급여) 월 300만원 이상 지급(퇴직금, 4대 보험 중 개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 상 월급여액은 276.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하되 연구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조정한다.

제24조 (재임용 및 계약해지원칙) ① 신진연구인력과 관계되는 모든 평가는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 실적에 근거하여 재임용을 심사한다.

② 교육연구팀의 운영위원회의 업적평가 시 부진 판정을 받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임용 기간 내 최저 1편의 논문 출판(혹은 출판예정)을 의무화하며 미 제출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 (기타)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장 및 대학의 승인하에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내·외 시간 강의 및 다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 장 산학협력전담인력 채용 및 지원

제26조 (목적) 이 지침은 아주 수리과학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팀 산학협력전담인력의 채용, 의무, 계약해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채용 시기) 산학협력전담인력의 필요가 인정될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 채용한다.

제28조 (채용 원칙) ① 교육연구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전담인력의 출신 비율, 교외 강의 기준은 신진연구인력과 동일하며,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채용 가능하다.

제29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 이상 최대 4단계 BK21 사업종료까지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 (급여) 채용 인력의 전문성, 대학 자체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단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파트 타임도 가능하다.

제 9 장 교육연구팀 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

제31조(참여교수의 성과급) 교육연구팀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참여교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기준으로 매년 평가 기간 말에 연구 실적을 포함한 사업 실적인 우수한 참여교수를 선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05.07.)

① 우수 참여교수 선발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성과급은 예산 범위 내에 지급 가능하다.

제32조(참여교수의 성과급 평가기준 및 결과 활용)

① 운영위원회는 해당연도 교육연구팀 연구성과물(논문, 학회개최, 발표, 특허 등) 중 대표 실적을 선정하고 해당 실적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참여교수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참여교수의 그해 연구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와 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를 합산해 우수 참여교수를 선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③ 성과급 지급 대상자의 개별 지급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1인당 연 480만원 이내로 한다.

제33조(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의욕 증진과 우수 연구실적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행한다. 연구 실적을 포함하여 사업 참여 실적이 매우 우수하여 지도교수가 신청하고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에 동의할 때 지급한다.

- ① 우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선발은 연구성과물(논문, 학회발표, 특허 등)을 바탕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후, 교육연구팀장 최종 승인 후 결정한다.
- ② 성과급은 예산 범위 내에 지급 가능하다.

제34조(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평가기준 및 결과 활용) ① 우수 참여대학원생 선발은 매년 평가 기간 말에 자체평가를 통해 연구실적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개정 2025.05.07.)

- ② 우수 신진연구인력 선발은 연도별 사업종료 시점에 자체평가를 통해 연구실적이 우수할 시 성과급을 지급한다.

제35조(교육연구팀장 및 교육연구팀 전담직원 성과급) 매년 2월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운영상 기여를 한 교육연구팀장 및 직원에 대하여 교육연구팀의 적절한 예산 항목 내에서 기 편성된 적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장 국제협력경비 사용 지침

제36조(단기해외연수)

- ① 지도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단기(15일 이내) 해외 연수비는 국제학술대회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의 참가 및 협력 대학 방문 교류 등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관리 운영 규정 및 본 교육연구팀의 단기 연수 경비지원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 ② 단기 해외연수 참여대학원생의 선발은 제출된 단기 해외연수 계획서 및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③ 단기 해외연수 기간 중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항공료나 체재비 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 ④ 장기해외연수에 선발된 참여대학원생은 지원한 연수과정에 대한 성과(연구결과보고서, 논문)를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장기해외연수)

- ① 대학원생 장기(15일 초과) 해외 연수비는 국외 협력 대학 방문 연구 지원 등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관리 운영 규정 및 본 교육연구팀 장기 연수경비지원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 ② 장기해외연수 참여대학원생의 선발은 제출된 장기해외연수 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 운영위원회에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③ 30일 초과 해외연수생에게 해당 연수 기간 국제화 경비를 통한 지원비 이외에는 대학원생지원비(장학금)를 지급할 수 없다.
- ④ 장기해외연수에 선발된 참여대학원생은 지원한 연수과정에 대한 성과(연구결과보고서,

논문)를 제출해야 한다.

제38조(국제학술회의 참가)

- ① 국제학술회의는 논문을 제출한 학술회의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가. 참가 국가 수 : 4개국 이상
 - 나. 구두발표 논문 20건 이상
 - 다.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단,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1 이상)
- ②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대학원생은 관련 논문 또는 작품의 공동 저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③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단순 참가 학생 선발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육연구팀장 승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 ④ 학회 단순 참가는 참여교수를 제외한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총 3인 이내에서 가능하다.
- ⑤ 지원 기준액 이상의 지원을 받을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원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해외석학 초빙)

- ① 해외석학은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 ② 세계 각국의 해외석학을 초빙하여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적극 개최하며 초빙 수당(강연료) 이외에 항공료 등의 여비, 체재비를 교내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제 11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기타 사항

제40조(자체평가)

- ①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교육연구팀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연구팀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기타) 본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며,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관리 운영 규정을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